



보건복지부	보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22.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손영래	전 화 044-202-3803
대외협력팀	담 당 자 김 민 주	1 2 1 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창 규	전 화 044-202-2897
방역지원팀	담 당 자 이 영 근	^{선 화} 044-202-3817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준헌	전 화 044-202-3725
자원관리2팀	담 당 자 김 우 람	^{선 화} 044-202-3726
보건복지부	과 장 김충환	전 화 044-202-3210
사회서비스정책과	담 당 자 백 수 민	선 약 044-202-32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 지부 장관)는 오늘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등 ▲보건소 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협조요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기부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1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 및 신천지 대구교회 협조를 통해 대구 지역 신도(약 9,334명) 명단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1차 2.20일 4,474명, 2차 2.21일 4,860명)
 - 1차로 확보한 4,474명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하였고, 행안부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 및 신천지 교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1차 로 격리된 신도 중 544명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 2차로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하고 증상유무를 확인 중에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도 조사할 계획이다.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종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2 대구·청도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 □ 2월22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155명이다. 확진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 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4,542명의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인근 대구동산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의 30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다.
-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2월 21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본부장, 진영 행안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함께 대구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 및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에 대하여 공공병원, 군(軍), 공중보건 의사 등 공공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으로 지원하고,
 - 매점매석 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 중 100만개를 대구·경북 등 민간시장으로 우선 공급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병상공급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국가 감염병전담병원(국군대전병원) 등의 병상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대구시에서 대구의료원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감염병전담 병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고, 보호장구·검사키트·음압장비·구급차 등 의료물품이 부족한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한편, 2월22일 9시 기준 경북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132명이다.
 -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 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 아울러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 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진료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3 보건소 의료인력 등 지원 관련 협조요청

-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행안부 및 각 시·도가 참석하는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산 대비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회의에서 각 시·도의 공중보건의사와 간호 인력(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중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해 파견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각 시·군·구 보건소별로 조속히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추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통해 각 시·도로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타 시·도에 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4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기부사례

- □ 한편, 민간에서는 취약계층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 애경산업·동서식품(주)·GS아울렛·모다아울렛 등의 기업과 개인 기부자가 마스크 70만 개를 포함한 약 30억 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 또한 신한은행에서 **마스크 6만 개**, 관세청에서 **마스크 약 7천 개**를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 기부된 마스크와 현금은 푸드뱅크,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2.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4. 감염병 예방수칙
 - 5.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일반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의료기관수칙



마스크등 보호구 착용 문진 人



환자의 해외여행력. 의심환자 접촉력 등 반드시 확인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STEP1 선제적 격리

STEP2 코로나19 검사실시

*관할 보건소신고필수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자 진료구역 및 진료절차 구분하여 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 돌기파달 영구, 골돌골 롯데지 않고 미끄크를 든 제 제도 2010년 기다 구기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살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감염병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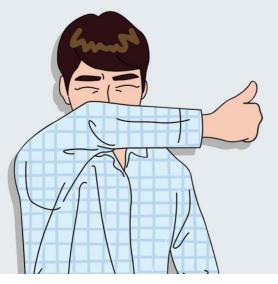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mark>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mark>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ㆍ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②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